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05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 엄태영·조지연·서천호

박덕흠 • 김상훈 • 윤한홍

최형두 • 박형수 • 유용워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검찰·해양경찰청·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및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

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마약수사청을 둔다.
- ⑤ 마약수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총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2조제4항에 규정된 사무는 마약수사청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청 또는 마약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마약수사청장이 승

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검찰총장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마약수사청장의 행위 또는 마약수사청장에 대한 행위 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마약수사청장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검찰청,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마약수사청, 마약수사청장 또는 마약수사청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법무부) ① ~ ③ (생	제32조(법무부)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u> <신 설></u>	④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마약수사
	<u>청을 둔다.</u>
<u> <신 설></u>	⑤ 마약수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
	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한다.